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90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양문석·박수현·서미화
조계원·양부남·윤준병
문대림·최민희·허성무
이재강·이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외교습”을 “과외교습(체육교습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능”을 “예능 또는 체육”으로 한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또는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외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을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교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u>과외교습</u> 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2. ----- ----- <u>과외교습(체육교습은 제외한다)</u> ----- -----.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 <u>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또는 <u>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외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u>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4. ----- ----- ----- -----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u>예능</u>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5. · 6. (생 략)	----- -----<u>예능 또는 체육</u>-----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	---